

# 총회 진행 규칙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2022

한국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독자를 위해 북미주 개혁신교회에서 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번역을 위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자([translate@crcna.org](mailto:translate@crcna.org))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론

총회(Synod): 총회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 총회란 무엇인가?

CRC 교단 **총회**는 총대들의 교회 회의로,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인과 회중, 노회, 기관 및 사역부를 치리하고 이끈다. 총회의 어원은 헬라어 σύνοδος (*synodos*)에서 유래되어 “의회” 혹은 “회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 총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의 위임을 받아 지역적으로 모이는 **노회**와 개 교회에서 선출되는 교회 **카운실**과 더불어, CRC 교단 **총회**는 필수적인 교단 규모의 관리 및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

A.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주요 책임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총회 회의를 이끌 임원을 선출한다.
2. 토론을 위해 분과회의 및 본회의에 의제의 맥락을 제공한다.
3. 교단이사회 운영 핸드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단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교단 기관, 사역부, 단체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그들의 권한, 내규, 정관을 감독한다.
4. 총회가 임명한 연구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5. 교단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사역 그룹의 대표자를 임명한다.
6. 신학교 교수, 대학 및 신학교 총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특정 직원과 기관대표를 임명하거나 비준한다.
7. 사무총장을 통해 교단 운영을 위한 방향 및 설명을 제공한다.
8. 교회헌법, 예전 양식, 신앙고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교회헌법 제 47 조 참조)
9. 교단 예산을 검토하고, 사역분담금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통해 교단 기관과 사역부의 재정을 감독한다.
10. 노회와 교회, 개인으로부터 제안서와 의견서, 항소를 받아 토론하고 처리한다.
11. 재판국(Judicial Code Committee)을 통해 총회로 넘어온 항소와 권고안을 판결한다.
12. 세계 교회와 타종교 관계 위원회(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를 통해 범교회적 관계를 감독하고 증진한다.

13. 역사기록 위원회(Historical Committee)를 통해 교단의 문서기록 작업을 감독한다.

14. 북미주 개혁교회의 목회자 후보들을 승인하고, 교단 영입위원회(Candidacy Committee)의 기타 업무를 감독한다.

15. 총회대리인(synodical deputy)의 임명을 비준하고 그들의 업무를 승인한다.

B. 총회의 부차적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총대와 자문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2. 예배, 기념행사 및 교재를 위한 교단 차원의 자료를 제공한다.

3. 세미나, 워크샵, 토론 그룹을 통해 사역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4. 때때로 서신 혹은 기타 양식의 의견서를 통해 현 사안 및 사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알린다.

(2019 총회 회의록, 807~808쪽)

I. 총회 소집 및 구성

A. 총회는 교회헌법 제 45, 46 조를 따라, 그리고 2000 년, 2019 년 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구성해야 한다.

B. 매 총회는 소집 교회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교회는 총회 3 개월 전, 교회 공식 출판물에 차기 총회를 공지할 의무가 있다.

C. 주일 총회 예배는 총회 예배 기획 위원회가 기획하며, 기존에 채택한 지침에 따라 현지 교회 회중을 최대한 사전 기획 및 예배 진행(예: 성찬식 혹은 구성원의 다양성 반영 등)에 참여시킨다. 총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예배에 참여한다.

(2019 총회 회의록 수정, 803 쪽)

D. 소집 교회의 목회자는 (혹은 목회자가 공석일 때는 카운셀러가) 임시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명된 당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임시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개회 예배를 인도한다.

2. 그 후, 임시 의장은 규정된 대로 총대의 교적 증명을 요구한다. 정족수, 즉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했으면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3. 각 후보자의 고유번호가 나와있는 후보자 명단에서 의장, 부의장, 서기, 부서기 순으로, 투표를 통해 총대가 총회 임원을 선출한다. 유효 득표수를 더 많이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선거 절차의 모든 단계마다 득표수를 공표한다. 총회는 다음 투표에서 어떤 후보자의 번호가 포함되는지 결정한다. 결정되면 득표수에 해당하는 명단을 알파벳 순서로 공표한다.

4. 그 후 임시 의장은 당선된 임원들을 강단에 앉도록 요청하고, 의회에 의장과 나머지 임원들을 소개한다.

E. 총회가 회기 중에 있는 동안, 그 구성원은 의장의 허락 없이 총회를 떠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총회의 동의 없이 총회에서 탈퇴하고 귀가할 수 없다.

## II. 총회 임원의 의무

### A. 의장

1. 의장은 총대와 자문위원을 기립시킨 후,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신앙 동의 공개 선언문”을 낭독시킨다. 그 후 이에 대한 동의를 한목소리로 선언하게 한다. 이후에 참석하는 총대가 있다면 착석 시 개별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의장은 예정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세션마다 개회와 폐회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3. 의장은 업무가 적절한 질서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처리되는지, 그리고 모든 회원이 규례와 격식을 지키는지 감독한다.
4. 의장은 에큐메니컬 총대나 다른 총회 방문자를 환영하고, 접수된 인사말에 회신하거나 혹은 이를 담당할 회원을 지명한다.
5. 의장은 동의 및 재청을 받은 모든 동의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모든 질문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하게 거론되어야 한다.
6. 의장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경우, 의장이 발언하는 동안 의장직은 양도되어야 하며,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인계한다. 의장은 의장직에 있을 때, 사실관계를 언급하거나 총회에 질서의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발언할 수 있다.
7. 의장은 동의안이나 사람에 대해 규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할 특권을 가지며,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총회는 과반수 득표로 의장의 사회권을 지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8.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의장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표를 행사할 수 있다.
9. 의장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10. 의장은 모든 순서에 대해 사회권이 있다. 어떤 총대라도 의장의 사회권에 불만을 표하고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과반수 투표로 의장의 사회권은 제한될 수 있다.
11. 의장은 마지막으로 적절한 발언과 기도로 총회를 마친다.

### B. 부의장

1. 의장의 부재 시, 부의장은 의장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수행한다.
2. 부의장은 환경이 허락하는 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의장을 돕는다.

### C. 서기 및 부서기

1. 서기는 매일 개회 예배 직후에 출석을 부른다.
2. 서기는 총회 진행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일정 별 개회 및 폐회, 출석을 기록한다.
  - b.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 동의안을 기록한다.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항소를 기록한다.
  - c. 분과회의의 모든 보고서와 총회의 모든 결정을 기록한다.
  - d. 에큐메니컬 대표단의 이름과 총회에서 소개된 모든 이름을 기록한다.

e. 총회 차원의 모든 서류와 모든 토론의 단계, 혹은 과반수 득표로 총회가 회의록에 포함시키기로 한 모든 언급을 기록한다.

3.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주 동의안을 제외한, 통과되지 않은 동의안

b. 철회한 동의안

c.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이름

4. 당일 회의록은 총회임원이 임명한 소위원회가 점검하고 교정한다. 편집 및 교정된 회의록은 총대가 읽을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 게재한다. 총대가 요청할 경우 복사본을 제공한다.

5. 부서기는 서기의 부재 시 서기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부서기는 서기에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한다.

### III. 비총대 총회 직원의 임무

#### A.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의 일정을 계획하며 총회 중에는 운영임원 역할을 담당한다.

2. 요청 시, 총회 석상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한다.

3. 총회 혹은 교단이사회가 허가해야 하는 공식 출판물을 편집하고 인쇄한다.

4. 총회 회의에서 사무총장 직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모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 B. 총회 자문위원

2014 년 총회는 총회 업무에 있어 자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자격을 갖춘 이들로 교수 자문위원을 선출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모든 교수 자문위원 선출에 있어 주요 기준은, 특정 총회의 안건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이어야 한다.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의 경우에는 선출의 근거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교회와 노회가 보낸 추천서에 달려있다.

(2014 총회 회의록, 537 쪽; 2015 총회 회의록, 673 쪽)

#### 1. 총회 자문위원 규정

a. 자문위원은 임명 조건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b. 자문위원들은 보통 총회 회기 동안 출석해야 한다.

c. 통상적으로 자문위원은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할 수 있다. 다른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발언하려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보고자에게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은 해당 위원장과 보고자의 재량에 달렸다.

d. 교수 자문위원은 조언 및 신학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총회 본회의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e.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는 총회 본회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자문하는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f. 자문위원들은, 정상적인 토론의 순서 안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총회 본회의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토론하는 가운데, 자문을 제공하고 총대를 섬기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g. 자문위원은 본인이 섬기는 자문위원회 혹은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

(2014 총회 회의록, 539-40 쪽; 2015 총회 회의록, 673 쪽)

h.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를 위한 일반 고려 사항

1) 자문위원(최대 3 명까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2 년의 임기 동안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각 총회마다 경험 있는 자문위원과 신임 자문위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통, 숙박, 식사 비용은 총회가 지급한다.

3) 일부 노회의 관행에 따라, 총회 참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는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 청년대표는 그들의 섬김에 대한 보수(사무총장이 때에 따라 정한 금액)를 받을 수 있다.

i.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의 자격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내 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보여준 흠 없는 교인이어야 한다.

j.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의 임명

교단이사회는 매년 2 월 회의 때 소수민족 및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대표를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교회가 추천한 자문위원 후보자들을 수합한다. 소수민족 자문위원 후보는 인종관계 사역부 대표도 추천할 수 있다.

## 2. 총회 자문위원 분류

a. **교수 자문위원**은 칼빈신학교 교수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다음의 일반 임명 절차를 따른다.

1) 사무총장은 총회 준비위원회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특정한 해에 필요한 신학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칼빈신학교 운영진과 상의하여 그 해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교수진을 선발한다. 칼빈신학교 운영진은 북미주 개혁신교회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총회의 필요와 교수진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해에 총회 자문위원으로 섬길 수 있는 교수진을 가려낸다. 교수 자문위원의 숫자는 보통 5 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자문위원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총회 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분과위원회로 지정된다.

3)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자문위원의 직무 범위는 총회의 총칙을 따른다.

b. **소수민족 자문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 총대구성으로는 적절히 대변되지 않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내의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목소리다. 2005 년 총회에서 채택된 선출 규정에 부합하는, 투표권 없는 자문위원을 최대 7 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소수민족 총대가 총 25 명 미만인 경우, 7 명(혹은 비율상)을 임명한다. 소수민족이며 투표권을 가진 총대가 18 명을 초과할 경우, 소수민족 자문위원은 7 명 미만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소수민족 자문위원이 2 명 미만인 되어서는 안된다. 자문위원들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위해 적절한 공지 시간을 주기 위해 임명될 소수민족 자문위원의 숫자는 이전 3 년 동안 총회에 참석한 소수민족의 평균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 자문위원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총회 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자문위원에 배치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직무 범위는 총회의 총칙을 따른다.

c. **여성 자문위원**은 회의에 성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총회 사역을 풍성하게 한다. 2015 년 총회가 지시한 선출 규정에 따르면, 최대 7 명까지 여성을 투표권 없는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성 자문위원이 총 25 명 미만인 경우, 7 명(혹은 비율상)이 임명될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진 여성 총대가 18 명을 초과할 경우, 여성 자문위원은 7 명 미만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2 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문위원들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위해 적절한 공지 시간을 주기 위해 임명될 여성 자문위원의 숫자는 이전 3 년 동안 총회에 여성 총대로 활동한 이들의 평균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 자문위원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총회 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분과위원회에 배정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직무 범위는 총회의 총칙을 따라야 한다.

d. **청년 대표**는 노회에서 선출한 총대구성으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청년(18-26 세) 교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다. 대표들을 임명할 때는 이전 총회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청년 대표는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총회 준비위원회가 승인하여 분과위원회에 배정된다.

2) 자문위원이나 본회의에서의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총회의 총칙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e. **직원 자문위원**은 사무총장실에서 섬기며 사무총장이 지정한, 교단의 행정 직원이다. 총회 준비위원회와 상의하여 총회 회의를 섬긴다. 다음의 일반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안건에 관한 모든 사안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문은 사무총장 혹은 그를 대표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2) 사무총장이 교단 직원 자문위원에게 분과위원회를 섬기도록 배정할 때, 교수 자문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로 배치될 필요는 없다.

3) 교단 직원 자문위원의 직무 범위는 그들의 특정한 전문분야에 한정한다. 이는 분과위원회와 총회 본회의를 섬길 때 모두 해당된다.

f. **교단 기관 이사회 대표단**(보통 기관 운영이사들과 기관 대표)과 **교육 기관 총장**은 그들이 대표하는 기관의 보고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그들과 관련된 보고서를 토의할 때, 총회 본회의에서 발언권이 주어진다. 칼빈신학교와 칼빈대학교 총장은 본인들이 대표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지정된다.

g.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이사회 대표단**은 교단이사회 의장, (미국과 캐나다를 각각 대표하도록) 최소 1 명 이상의 다른 교단이사회 임원, 북미주 개혁신교회 사무총장, 총회를 섬기는 교단 행정 직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단이사회 안건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와 회의 할 권한이 있으며, 교단이사회 안건이 본회의에 언급될 때 회의에 출석할 권한도 있다.

(2014 총회 회의록 537-39 쪽; 2015 총회 회의록 673 쪽;  
2017 총회 회의록 641 쪽; 2019 총회 회의록 810 쪽)

h. **규칙위원**은 매년 총회가 열리기 전에 총회 준비위원회가 임명한다. 규칙위원의 의무는 교회헌법 및 총회 절차 규칙과 관련된 적절한 절차에 대해 의장에게 조언하고, 석상에서 회의 절차상의 어려움에 대응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임원들과 함께 돕는 것이다. 임명된 자는 교회헌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며, 총회 의석에서 임원 및 기타 직원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임명된 자는 총회 진행 규칙에 관련해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즉각적인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임원 선출 시 교육을 제공한다. 이 직위는 교회 정치(church polity) 교수 자문위원이 맡을 수 있다. 1년 임기동안 섬기는 규칙위원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 IV. 에큐메니컬 대표단과 교회 정기간행물 보고자

A. 교단간 교제 차원에서 각 교회에서 모인 범교회적 에큐메니컬 대표단은 총회 앞에서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원장의 허락 하에 분과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1975 총회 회의록, 39 쪽)

B. 총회 특파원의 업무는 총회 활동과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 V. 총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 A. 정의

#### 1. 항소

항소는 의회나 이사회, 기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를 교회의 기존 정책 및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기 위해, 적절한 의회로 회부되는 절차이다.

#### 2. 의견서

의견서는 총회의 토론을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 생각, 의견, 불만 혹은 반대 의사를 기록한 문서이다. 제안서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는 것에 반해, 의견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의견서의 종류 중 하나는 회의의 결정이나 회의 후 조치에 대해 불만이나 반대를 표현하는 시위다. 의회에서는 의견서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 3. 제안서

제안서는 의회가 제안을 채택, 또는 정책이나 기타 의회에 의한 입법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의회로 보낸 공식 서면 건의이다.

#### 4. 보고서

보고서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나 위원회, 혹은 기관이 수행한 사역을 기록하고 의회의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기록한 문서이다.

### B. 다음은 총회가 다룰 적법한 사항 목록이다.

#### 1. 이의제기

(지침과 규정은 교회헌법 제 5 조 보칙 참조)

#### 2. 보고서

이사회를 포함하여 이전 총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보고서

#### 3. 총회 제안서 및 의견서

a. 노회 (노회가 발의했거나 채택했는지 관계없이) 혹은 교회헌법 제 44 조 b 항에 따라 조직된 의회가 제출한 제안서와 의견서.

(1993 총회 회의록, 574 쪽)

b. 카운실 그리고/혹은 노회로부터 채택되지 못했지만 개인이나 카운실이 총회로 보내기 희망하는 제안서와 의견서:

1) 카운실(카운실이 발의했거나 채택했는지 관계없이)이 노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노회가 채택하지 않은 제안서와 의견서.

2) 카운실과 노회에 제출했으나 카운실이나 노회가 채택하지 않은 개인이 올린 제안서와 의견서.

3) 개인이 제출한 것을 해당 카운실이 채택하여, 카운실에서 노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노회가 채택하지 않고, 카운실도 총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처음 발의한 개인이 총회에 제출하는 제안서와 의견서.

c. 의회와 구성원들은 이미 총회 안건집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동의 혹은 반대 의사를 표현한 제안서나 항소, 의견서 제출은 삼가야 한다.

사무총장은 출간된 **총회 안건집**에서 그런 안건들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그런 안건들의 경우 단순한 목록으로 제시되거나 의견서로 받아야 한다. 그런 안건의 제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그들의 안건 자료들은 해당 총회 분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정보로서 받은 사안들은 대개 분과위원회 보고서나 **총회 회의록**에 언급되지 않는다.

#### 4. 재판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항소들

(항소와 관련한 절차 규칙은 교회헌법 제 30 조 a, b 항 보칙 B 부분을 보라.)

#### 5. 재판국 규칙에 따라 총회에 합당하게 제출된 항소 및 기타 안건들

(재판국 규칙은 교회헌법 제 30 조 c 항 보칙 참조)

#### 6. 교단 영입위원회로부터 추천받지 못한 개인의 목회자 후보 지원

(적용가능한 절차 규칙은 교회헌법 제 30 조 b 항 보칙 A 참조)

#### 7.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안서와 의견서

안건을 제시한 본인이 카운실이나 노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제안서와 의견서. 이런 사안은 정보로 접수해야 하며, 사무총장에게 안건 제시자가 그 안건에 대해 카운실이나 노회와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정보로 받은 이 안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8. 늦게 제출된 보고서와 제안서

이미 출판된 **총회 안건집**에 실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9 월 15 일 이후에 접수된 교리나 윤리적 입장, 교회헌법 개정안에 관한 이사회나 위원회의 연구보고서나 권고안, 그리고 3 월 15 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서는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외의 제안서나 연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총회의 특별 결정 하에 다루질 수 있다.

#### 9. 인쇄된 안건집과 연구위원회 보고서

연구위원회 보고서는 9 월 15 일 또는 그 이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접수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보고서를 11 월 1 일까지 교회에 배포해야 한다. **총회 안건집**은 4 월 초 이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안건은 상임위원회, 연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노회, 카운실, 개인의 제안서; 출간된 항소; 미출간된 항소의 공지; 의견서 목록; 총대 명단; 관련 공지를 포함해야 하고,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교단이사회는 합당한 이유로 인해, 어떤 안건을 출간하지 않거나 또는 요약판으로 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요약판으로 발행될 경우, 전체 안건은 해당 총회 분과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 출간되지 않은 안건들도 **총회 안건집**에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안건들은 다음 마감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위원회 보고서는 9 월 15 일; 상임위원회 및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보고서는 2 월 15 일; 이사회 보고서는 이사회 모임이 끝난 뒤 10 일 이내지만, 3 월 1 일을 넘기면 안 됨; 그리고 제안서와 항소는 3 월 15 일.

#### 10. 보충 보고서

ReFrame 미디어 선교부와 Resonate 글로벌 선교부의 보고서를 포함한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이사회; 칼빈신학교 이사회; 칼빈대학교 이사회; World Renew 국제 구제부 이사회; 에큐메니컬 위원회; 역사기록 위원회; 그리고 교단 영입위원회는 3 월 15 일 이후에 보충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는 안건들을 최대한 출간된 총회 안건집에 포함되게 하고, 보충보고서에 관련된 안건들은 최소로 유지해야만 한다.

#### 11. 기밀 사항들

준비위원회 혹은 교단이사회의 조언 아래, 사무총장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미출간된 항소, 의견서 혹은 총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 관련 분과위원회에만 배포된다. 이름 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류에서 이름이 삭제될 것이며, 해당 사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로 다루질 것이다.

(2013 총회 회의록, 549 쪽; 2017 총회 회의록, 641 쪽)

#### 12. 기타 사안들

기타 모든 사안들을 총회가 받을지는 다수결 투표로 의결한다.

#### 13. 교단외부 기관들

교단의 후원을 받는 외부기관들은 대개 총회에 연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지정된 구역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

### VI. 총회 위원회

#### A. 준비위원회

##### 1. 회원

- a. 준비위원회는 기존 총회의 임원과 북미주 개혁신교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 b. 준비위원회에 공석이 생긴 경우, 교단이사회는 다른 준비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 2. 분과위원회 구성

- a. 준비위원회는 5 월 1 일 이전에 미리 만나서 다양한 분과위원회에 총대를 임시 배정한다.
- b. 준비위원회는 모든 보고서, 제안서, 기타 의견서를 다양한 그룹에 맞게 분류하고, 어떤 안건을 총회에 바로 상정할지, 어떤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지 검토한다.
- c. 지정된 총대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총대가 총회의 수정을 거쳐 지정된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 3. 사무총장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총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표로 만든다.
- b. 5 월 15 일 이전까지 총대에게 분과위원회 임시배정을 알린다.
- c. 위원장들과 총대가 맡은 과제와 관련된 배경 설명을 제공한다.
- d.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전 **총회 회의록**에서 얻을 수 없는 배경 정보들에 대한 사본을 제공한다.

##### 4. 총대의 신상정보

- a. 모든 노회의 서기는 각 총대에 대한 신상정보를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사무총장에게 3 월 15 일 이전까지 보내야한다. 총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 총대를 자기 소개서와 함께 추천한다.
- b. 이러한 신상정보는 다음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목사 총대의 경우 -

- 1) 이전 총회에 총대로 참여한 경험은? 몇 년도?
- 2) 그 총회의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섬겼는가?
- 3) 교단이사회, 상임위원회 혹은 연구위원회에서 섬기고 있거나 과거에 섬긴 경험이 있는가?
- 4) 노회 및 혹은 지역교회 위원회에서 섬기고 있거나 과거에 섬긴 경험이 있는가?
- 5) 총회 업무 중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심사는 어떤 분야인가?
- 6) 당신을 총회 분과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정보는 무엇인가?

장로 및 집사 총대의 경우 -

- 1) 목사와 동일한 질문.
- 2)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
- 3) 이전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5. 준비위원회 보고서

- a. 준비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는 5 월 25 일 이전에 모든 총대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 b. 총회 사무의 초기 항목 중 하나로 수정과 채택 가능성을 위해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1970 총회 회의록, 56-57 쪽; 1972 총회 회의록, 14 쪽)

B.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성격**. 분과위원회는 (재판국은 제외하고) 총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오직 총회 기간에만 섬긴다. 분과위원회는 주어진 문제를 요약하고 그 문제와 관련한 제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2.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직과 규칙**

- a. 위원회 임명 시 처음 불리는 사람은 위원장이고, 두 번째 불리는 사람은 보고자다. 재판국을 예외로 각 분과위원회에 부위원장과 부보고자를 임명한다.
- b.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 사회를 보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핀다.
- c. 총대와 자문위원은 지침을 따라서 분과위원회 회기 중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총대가 아닌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회의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총회 회의록, 811-12 쪽)

- d. 총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 앞에서 발언하기 위해 어떤 위원회든 참석할 수 있다.
- e. 위원회 보고서는 위원장과 보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다수의견 보고서와 소수의견 보고서가 둘 다 있다면, 각 보고서는 그것에 찬성하는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비고:** 위원회 위원들은 소수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소수 반대의견을 언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반대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f. 다수의견 보고서가 위원회의 보고서로 간주된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낭독되고 채택된 뒤, 소수 보고서를 읽고 정보로 받는다.

(1955 총회 회의록, 58 쪽)

g. 위원회의 보고서가 인쇄된 형태로 사전에 총회에 배포되고, 총회의 구성원들이 이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보고서를 낭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의장이 보고를 요청할 때, 보고자는 그 보고서가 인쇄물로 총회에 배포되었음을 진술하고 토론을 위해 그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

h. 토론 중에는 주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보고자가 보고서를 변호한다. 이들은 모든 다른 발언자보다 우선 발언권을 가지며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기존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i. 총회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 위원회의 권고안은 다시 회부될 수 있다.

### 3. 연구를 위한 총회의 휴정

분과위원회가 임명된 후, 총회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휴정할 수 있다.

#### C.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에 각 총회는 다음 위원회를 세워야 한다.

1. **환영 위원회.** 의장이 임명하며, 에큐메니컬 대표단 환영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는 총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총회는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을 총회에 참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의장이 임명하고 총회 회기 동안 섬기는 특별위원회

#### D. 이사회 및 위원회 임명을 위한 규칙

1. 모든 연구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총회 임원들의 조언 하에 임무의 초안과 함께 작성한 추천 후보자를 총회가 임명한다. 총대는 분과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석상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자는 총회 회의 시 후보자를 발표한다. 연구위원회 임명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할 경우 기한을 2 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총회 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보고자, 분과위원회가 위원 중 선출된 1 명에게 있다.

분과위원회는 총회에 임무의 범위에 대해 조언해야 하며 다음의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조언 가운데 포함한다.

#### a. 총회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양한 교회를 대표하는 회원 9-12 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상의 규칙에 의거하여 총회가 임명하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하고, 임명된 후 3 년 뒤에 총회에 보고 해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도 보고할 수 있다. 각 교회에 배부하기 위한 최종 보고서를 9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기로 계획된 총회가 열리기 전인 11 월 1 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보고서가 10 쪽 이상일 경우 개요서를 포함해야 한다.

#### b. 총회 특별위원회

총회 특별위원회는 자격과 권한이 더 제한되어 7-10 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의 규칙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총회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받는다. 종종 임명된 후 2~3 년 뒤 총회에 보고를 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사이에도 보고해야 한다. 총회는 정해진 임무가 중요한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각 교회에 배부하기 위하여 최종 보고서를 9 월 15 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보고하기로 계획된 총회가 열리기 전인 11 월 1 일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총회 안건집에 포함시키기에 2 월 15 일 마감일이 충분한지 밝혀야 한다. 제출하는 보고서가 10 쪽 이상일 경우 개요서를 포함해야 한다.

위의 규칙의 예외로, 총회는 교단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특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북미주 개혁교회 사역과 관련이 있고, 교단이사회를 통한 보고가 빈번한 의견교환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도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렇게 한다. 교단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동의와 같은) 평가를 제공하거나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총회 연구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어떤 문제가 교단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일 경우 그렇다.

총회는 매년 주된 연구보고서가 2 종 이상이 되지 않도록 안건을 제한해서 좀 더 풍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1979 총회 회의록, 15 쪽; 1980, 21 쪽; 1997, 634 쪽;  
2014, 540 쪽; 2016, 827-28; 2017, 641 쪽; 2019, 803 쪽)

2.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위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와 위원회 위원들의 공석은 첫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위해 보통 다수의 후보자 명부를 제공하는데 교단이사회 노회 후보자들은 예외이다. 이사회와 위원회는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 단수 후보자 (재임자)를 제시한다. 몇몇 이사회는 그들 정관 혹은 내규에 따라 결정하여 세 번째 임기를 위한 회원을 제시한다.

(1976 총회 회의록, 16 쪽; 1998 개정판, 406-407 쪽;  
2015, 633 쪽; 2017, 640-41 쪽)

3. 모든 상임이사회와 총회 위원회, 그리고 노회의 서기들은 후보자 명단이 결정된 회의 직후 그들이 결정한 후보자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시한다.

(1979 총회 회의록, 16 쪽)

4. 총회 임원, 직원, 대리인, 이사 및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979 총회 회의록, 15 쪽)

5. 총회 회장은 사무총장을 총회의 임명과 관련된 모든 무기명 투표, 후보 추천, 그리고 다른 사안에 참석하도록 요구한다. 연구위원회 위원 지명은 예외로 한다. (참고: 포인트 1)

6. 직무 자격과 임기에 관한 규칙

a. 한 이사회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는 이 특정 이사회의 총대가 될 수 없다.

(1966 총회 회의록, 87 쪽)

b. 3년 임기의 총회 이사직과 위원회직을 2회 담당한 자들은 재선 자격이 없다. 총회가 이 조항에 대한 특정한 예외를 승인했을 때는 가능하다.

c. 교단이사회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임원의 임기는 시작 또는 종료하는 연도의 7월 1일에 시작하거나 끝난다.

(1972 총회 회의록, 14 쪽; 1996 총회 회의록, 536 쪽)

d. 교단이사회에 예상 밖의 공석이 생겼을 경우, 교단이사회는 노회 추천이사를 뽑기 위하여 노회와 상의하여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다음 총회 전에 새로운 노회추천이사 혹은 비례대표가 임명되기 전까지 업무를 본다. 새로운 교단의 이사로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후 본인의 임기를 다 하지 못한(예. 질병이나 이전) 이사를 대체하여 총회에 의해서 선출되면 새 이사는 보통 전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

(2017 총회 회의록, 641 쪽)

#### E. 이전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를 위한 규칙

이러한 위원회들은 교단 전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며, 지난 총회의 특정한 결정을 실행하거나 교단의 선교, 교육, 출판, 구제 사역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1. 이러한 위원회는 총회에서 그들의 보고서를 명확히 전달하고,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위원회의 대변인은 회의 중에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보고자와 동일한 특권을 갖는다.

2. 만약 분과위원회에 넘겨진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분과위원회의 권고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의 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 F. 총회 재판국

##### 1. 권한

총회 앞에서의 심리와 항소는 총회가 임명한 재판국과 상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회 사이에 업무상 필요한 만큼 자주 만나고, 권고안을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체로 일반적인 분과위원회처럼 기능한다.

##### 2. 위원자격

재판국은 12 명으로 구성되며 교단의 다양성을 드러내야 한다. 매년 4 명이 3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최소 이 4명 중 1명은 목사나 전도 목사여야 한다. 최소 1명은 법률가여야 한다. 최소 1명은 목사, 전도 목사나 법률가가 아니어야 한다. 총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단이사회가 제시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재판국은 교단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총회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위원회의 공석이 있을 경우, 교단이사회는 임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석에 임명해야 한다. 위원은 재선이 가능하나 6년 이상 섬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년 이상 위원회직에서 떠났던 이전 위원은 새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주어진다. 재판국은 위원 중에서 국장과 보고자를 선출한다. 재판국의 위원은 누구든지 해당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재판국 권한으로 행하는 총회에서의 심리와 항소 절차

a. 총회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제기된 고발은 재판국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북미주 개혁교회 사무총장이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b. 노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 또한 재판국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교회 사무총장이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c. 총회의 기관, 이사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들어온 서면 고발 및 총회가 행해야 할 공식적 판결을 요하는 기타 다른 사안들 또한 재판국 절차에 따라 재판국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교회 사무총장이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d. 노회 앞에서의 항소에 이어 총회에 접수된 항소 심의 또한 북미주 개혁교회 사무총장이 재판국에 제시해야 한다. 재판국은 항소를 검토하고 교단이사회에 접수된 항소장이 계속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권고한다. 교단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항소심리는 진행하지 않는다. 승인이 되면 재판국은 재판국 절차에 따라 항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e. 보통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총대가 발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총대는 재판국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다.

f. 재판국은 사실확정과 권고, 권고의 근거와 함께 서면 권고안을 총회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총회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된 사실확정과 권고에서 실명 공개가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명을 삭제해야 해야 한다.

g. 총회 토론 시, 재판국은 석상에서 발언권을 갖는 대변인을 2 명까지 세울 수 있다. 이 대변인들은 다른 발언자보다 우선권을 갖고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

h. 변론을 위해 각 진영에서는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요청은 총회에 한 요청에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한 재판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i. 만일 총회가 원고나 피고가 총회에서 진술하도록 허용한다면, 보고자가 재판국의 권고안을 제공한 후에 (만일 다수의견 보고서/권고안과 소수의견 보고서/권고안이 있다면, 둘 다 제시된 후에), 원고에 대한 반박 기회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원고나 피청구인은 심리에서 진술한 바와 다르지 않게 (헌법 30 조 c 항 보칙, 섹션 5, a, vii), 그들의 입장을 요약할 기회를 갖는다. 진술은 5 분 이내여야 한다. 만일 양쪽 진영 모두 총회에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다면, 원고가 총회에서 먼저 5 분 이내의 진술할 기회를 받으며, 그 이후에 피고가 5 분 이내의 진술할 기회를 받는다. 재판국장 혹은 사무총장은 양측에게 총회 진술의 기능은 사건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을 총회에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지침을 주어야 한다. 총회 진술 이후에, 어떤 진영도 총회에 추가 의견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이나 의견,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서도록 총회에 요청할 수 없다.

j. 재판국은 재판국 사건에 관하여 총회 임원에게 합당한 서면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k. 총회는 재판국 사건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안을 결정.

2) 합의나 화해를 위해 다른 위원회에 결정을 맡김.

3) 적절한 노회나 카운실에 권고 사항과 함께 송부.

4) 심리 혹은 항소 심리를 직접 진행.

l. 총회는 반드시 재판국이 제시한 사실확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예외로 한다.

1) 한 측 혹은 양측이 심리 중 중요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을 때,

2) 한 측 혹은 양측이 재판국이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접수했음을 알았을 때,

m. 만일 총회가 자체적으로 심리 혹은 항소심리를 진행하려면, 정해진 재판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

n. 총회는 그 문제를 다시 재판국에 회부하여 처음 심리했던 의회에서 재심을 열도록 결정할 수 있다.

o. 재심 청구 절차와 관련해 위의 섹션 k 부터 m 까지를 보라

1) 총회가 자체적으로 심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재심을 위해 그 사안을 회부하려는 측은, 그 요청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총대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본을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에는 해당인이 심리에서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거의 요약과 어떤 식으로 거부됐는지에 대한 짧은 진술, 또는 새로 발견된 증거 요약 및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 모든 당사자와 재판국 대표는 이런 요청에 대해 총회에 언급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허용 된다.

p. 권고안이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교회헌법과 같은 행정 원칙의 해석이나 적용이 개입되는 경우, 총회는 그런 해석이나 적용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재판국의 권고에 따라 총회 의장이 지정한 충분한 시간을 당사자들과 재판국 대표자에게 허락해야 한다.

(1993 총회 회의록, 500-501 쪽)

(2014 총회 회의록, 569 쪽)

(2019 총회 회의록 개정, 718 쪽)

**비고:** 재판국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설명 전부를 보려면 교회헌법 30 조 c 항 보칙을 참조하십시오.

## VII. 총회에서의 연금 문제

총회는 교단 은퇴 플랜과 관련된 실질적 사안이 포함된 제안서, 소수의견 보고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금 이사회의 조언 이후로 미룬다. 이는 연금 기금 이사회의 권고안을 따르는 총회 재정 분과위원회의 결정 또는 독립적인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회를 향한 권고는 교단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총회 재정 분과위원회의 제안서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4 총회 회의록, 623-24 쪽)

## VIII. 진행 규정

우리 교단의 회의는 교회헌법 제 28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회에 관한 일들만 처리하며, 그것들을 교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룬다.” 따라서 총회는 토론과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진행 규정과 관련된 다음 섹션이 제시하듯,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9 총회 회의록, 804 쪽)

### A. 총회의 비공개 세션

1. **내부회의:** 총회는 특별하거나 민감한 상황에서 내부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회의에는 오직 총대, 직원 자문위원, 신학교 자문위원, 교단이사회 의장과 위촉된 이사 1 명, 그리고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만일 교회 공동체 교제 차원에서 잘 알려진 교회에서 온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했다면, 그들도 이 세션에 참석할 수 있다.

2. **극비 내부회의:** 총회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극비 내부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 대개 개인의 명예나 교회의 안녕을 위한 합당한 예우에 따라 진행된다. 그런 세션에는 오직 총대, 사무총장이 추천한 직원 자문위원, 신학교 자문위원, 교단이사회 회장과 위촉된 이사 1 명이 들어가야 한다. 만일 위에 언급된 자들 가운데 다루는 문제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 혹은 총회 규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3. 내부회의 또는 극비 내부회의에서 진행된 결정이나 보고는 회의의 승인에 따라서, 공적인 문서에 무엇을 포함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해야 한다.

(2015 총회 회의록 627 쪽, 2017 총회 회의록 개정, 641 쪽, 2019 총회 회의록 804 쪽)

### B. 주 동의안

이 동의안은 고려사항이나 행동사항으로 총회에서 거론되는 사안이다.

1. 주 동의안은 다음의 조건하에 받아들여진다.

a. 회장이 동의안 제시자를 지명할 경우

b. 총회 회원의 재청이 있을 경우

c. 동의안이 회장에 의해 받아들여질만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d. 회장의 요구에 따라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시되었을 때

2. 주 동의안은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 동의안이 교회헌법과 충돌되거나 개혁교회 신조의 성경해석에 반할 경우

b. 다른 동의안이 총회 앞에 있거나 그 동의안이 총회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과 충돌할 경우

c. 동의안이 총회가 이미 한 번 거절했던 동의안과 상당히 비슷하거나 이전에 제시되었던 사안이지만 어떤 처분도 없었던 사안에 있어서 총회가 행동할 자유를 간섭하는 경우

C. 동의안을 개정할 경우

이는 주 동의안에 대한 최종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표현과 의미에 있어서 주 동의안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다.

1. 동의안 개의는 다음 중 어떤 것이든 제안할 수 있다. 특정한 단어, 구절, 문장 혹은 문단을 빼는 것, 삽입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것
  2. 동의안 개정은 그것이 주 동의안을 무효화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적절하지 않다.
  3. 동의안 개정은 허용되고 재청을 받을 수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을 개정하는 경우는 한번에 한 동의안만 개의할 수 있다.)
  4. 동의안 개정은 의장이 지명하고 받아들여질만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총대가 재청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안은 토의를 시작하게 한다.
  5. 사소한 개정은 의장이 의회 앞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주 동의안 작성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총대의 반대도 받지 않으면, 의장이 개정 채택을 선언할 수 있다. (때때로 “우호적인 개정”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약 개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
- (2019 총회 회의록, 804 쪽)

#### D. 동의안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

1.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의안 상정을 임시로 보류할 수 있다. 동의안의 보류는 의회가 한 시간 내지 하루 후에 심리를 재개할 것임을 의미한다. 보류된 동의안은 논의될 수 없다.
2. 만일 한 안건을 어떤 시간에 다루기로 연기했지만, 그 시간에 총회가 다른 미결 문제로 바쁘고 또한 그 안건을 총회 폐회 전까지 연기해도 된다면, 총회는 그 연기된 안건 때문에 진행 중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3. 만일 총회가 안건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총회는 그 조치를 보류하는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조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토론할 수 있다.
4. 추가 논의 및 개정 가능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동의안은 토론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하다.

(2019 총회 회의록, 804-805 쪽)

#### E. 의장의 사회권 보류

누구든지 의장의 진행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의장의 사회권 보류안을 토론하려면 재청이 있어야 한다. 사회권에 이의를 제기 받았을 경우, 사회를 주재하는 사람은 의장의 사회권을 지속할지에 대해 의회가 투표로 결정할 때까지 의장의 사회권을 양도한다.

(2019 총회 회의록, 805 쪽)

#### F. 항의할 권리

모든 구성원은 총회 결정에 대해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항의는 즉시 이루어지거나 관련 사안이 발효되는 회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항의는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구성원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반대표를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투표 종료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표를 기록하는 이유는 보통 총회가 특별히 결정하지 않는 한, 반대표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 G. 동의안 분리에 대한 요구

한 부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동의안은, 한 명 이상의 총대의 요구에 따라, 총회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분리해야 하고 투표도 따로 해야 한다. 동의안 분리에 대한 요구는 고려하도록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2019 총회 회의록, 805 쪽)

#### H. 의사진행발언

총회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목적을 성취하는 법, 즉 목적을 위해 총대가 합당한 절차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 I. 한번 결정된 안건을 총회로 다시 회부하는 동의안

총회의 멤버가 중요한 이유로 한번 결정된 안건을 재고하기 원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을 재고**하자는 동의안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동의안의 목적은 토론을 다시하고 다시 투표하자는 것이다. (동의안은 이전의 결정에서 다수 쪽에 투표했던 자가 제출해야만 한다.) 재고를 요청하는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야 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수정될 수 없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 이전 결정을 폐지하기 위해 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 이런 동의안의 목적은 이전 결정을 폐지하거나 뒤집으려는 것이다. (폐지는 총회가 세션에서 행한 결정에 적용된다; 그것은 이전 총회의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총회는 이전 총회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총회는 이전 총회가 도달한 결론과 차이가 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가장 최근에 내린 결정과 상충되는 이전의 모든 결정들을 무효화한다.) 이전 결정을 폐지하려는 동의안은 이전과 동일한 회의가 상정해야 하고 이전에 투표하여 우세한 측에 속한 총대에 의해 재청되어야 한다. 그 동의안은 토론과 수정이 가능하고, 통과를 위해서는 2/3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9 총회 회의록, 805-806 쪽)

#### J. 토론

1. 발언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심의와 토의 중 발언의 길이는 한 명당 최대 3 분으로 제한한다.

(2019 총회 회의록, 815 쪽)

3. 발언권을 가진 회원이 토의 중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하게 긴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어떤 회원이 사안에 대해 두 번 발언했으면 보통 회장은 아직 두 번 발언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5. 총회 임원은 그들의 예상에 한 시간 넘게 토론할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위한 시간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보고서의 보고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총대는 시간제한에 도달했을 때 30 분 간격으로 토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다.

6. 토론 중인 동의안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될 때, 의장은 토론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만일 총회의 다수가 이 제안을 지지하면, 토론은 종료되고 투표가 행해진다. 더 이상의 발언은 허락되지 않는다.

7. 안건이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여겨질 때 총대는, 주 동의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말할 필요 없이, 토론종료(또한 “즉시 투표 요청”으로도 알려진)를 동의할 수 있다. 토론의 종료를 동의하는 자는 총회 석상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자들, 즉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특권을 가진 자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토론 종료의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토론없이 한번에 행해져야 한다. 다수가 토론의 종료를 찬성하고, 직전까지 총회 석상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던 자들이 토론되고 있는 동의안에 대해 발언을 마치고 나서야, 총회 앞에서 투표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토론종료 동의안이 총회에 의해 채택되면, 주 동의안을 개정할 동의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 총회 회의록, 806 쪽)

K. 총대와 자문위원은 본회의 중 총대가 아닌 자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소통을 회피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소통은 심사 숙고 과정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총회 회의록, 811-812 쪽)

#### L. 보고서 상정의 기준과 절차

1. 총회 연구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과 분과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연구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이 총회에 의해 우선적으로 상정된다 (cf. 섹션 VI, E, 2).

2.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다수의견 보고서와 소수의견 보고서가 있을 때, 먼저 다수의견 보고서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정보를 위해 소수의견 보고서의 권고안을 낭독한다. 다수의견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상정된다. 소수의견 보고서의 권고안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견 보고서의 상정이나 다수의견 보고서의 권고안을 무산한다는 동의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섹션 VI, B, 2, e 참조)

(2019 총회 회의록, 806 쪽)

#### M. 투표

다양한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두투표** (찬성 혹은 반대). 투표에서 흔한 방식이다.

##### 2. 전자 투표.

a. 의장이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다수인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나 총회 구성원 중 누구든 의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경우, 회장은 총대에게 전자 재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전자 투표의 결과는 그 사안에 대한 총회의 공식적 결정을 포함한다.

b. 이 방식은 어떤 투표에나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지만 전자투표는 민감한 경우,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N. 이러한 총회 절차에 대한 규정은 총회의 다수결 투표로 유예, 개정, 수정 혹은 폐지될 수 있다.

2022 년에 업데이트됨

## 북미주 개혁교회의 신앙 동의 공개 선언문

우리는 여기 총회 안건집에 제시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북미주 개혁교회의 총대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고 북미주 개혁교회의 회중이 고백하는 문서에 완전히 동의하여 이 임무를 감당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삶을 위한 유일하고 무오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가지 신조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기독교 신앙의 공교회적 표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가지 고백이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돌트 신경- 역사적 개혁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이며,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역사적 신조와 고백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대어 신앙고백**의 증언을 현 개혁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조에 따라 토론하고 결정할 때, 힘을 다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추구하기를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되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요 17:20-23).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총대는 북미주 개혁교회의 신조에 동의함을 표현해야 한다.]

2013 년 총회에서 채택